

[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] 제2026-58호

2026년 K-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 추가 공고

2026년도 『K-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』의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

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

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※ <붙임서식>

- ① (별지 1호) 2026년 K-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
- ② (별지 2호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③ (별지 3호) 2026년 K-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 통합 운영지침

세부 사업명	K-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	공모 유형	자유 공모형
<p>▶ 지원목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 잠재력이 높은 전략국가에 'K-뷰티 해외 판매장' 운영 및 맞춤형 수출 프로세스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판매장 운영을 통해 K-뷰티 기업의 안정적 판로와 수출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한 현지 정착 성공률 제고 			
<p>▶ 지원대상 및 조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(주관기업)과 중소·중견 화장품 기업(참여기업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			
지원 대상		지원 조건	
유통기업 (주관기업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판매장 운영국가에 국내 화장품 판매·홍보·유통이 가능한 기업 	
화장품기업 (참여기업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국내 화장품을 제조·책임판매·유통·수출하는 기업(15개사 이상) ※ 스킨케어, 메이크업, 헤어케어, 바디케어 등 	
<p>※ 선정된 컨소시엄은 1차년도 운영기간 내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'통합 입점 상담회(가칭)'를 통해 <u>10개사 이상 추가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</u></p>			
<p>▶ 지원규모 및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K-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및 참여기업의 현지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정부지원금의 50%이상 기업부담금(현금 또는 현물) 매칭 			
지원분야	지원금액 및 기간	선정 예정 과제수	지원내용 및 범위
K-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	과제당 연간 최대 200백만원 (최대 3년)	최대 2개 기업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수출 전략국' 내 판매장 운영 및 수출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- 임차료, 제품 전시, 홍보·마케팅, 인허가, 물류·통관 등 ※ (수출전략국) 중국, 일본, 아랍에미리트, 폴란드, 영국, 브라질, 멕시코, 대만
<p>▶ 성과목표 및 결과 활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종평가 시, 목표달성 여부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 최종평가 시 필수 결과물로 '최종 보고서'를 제출해야 함 			
수행 내용	성과목표 및 증빙자료 예시		비고
판매장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여기업수 : 컨소시엄 협약서 등 수출계약액 : 수출면장 등 인허가등록 : 인허가 등록증 등 바이어상담 : 상담일지(자율양식) 홍보·마케팅 : 홍보·마케팅 실적 스크랩 또는 캡처본 		필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수행을 통한 주요 성과 홍보 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사항을 표시 사업 수행기업은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성과조사, 공시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함 			
<p>▶ 특이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★) 동 사업의 수행기업(주관기업+참여기업)은 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동 사업 관련 행사(통합설명회, B2B행사, 성과교류회 등)에 필히 참석해야하며, 불참 시 연차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★) 주관기업은 국내 화장품 관련 법률,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주관기업에 있음. 			

1

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수출 전략국 대상 현지 맞춤형 ‘원스톱(One-Stop) 밀착 지원’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현지 정착 성공률 제고
 - 인허가(준비)→통관·물류(진입)→마케팅·판매(안착) 등 수출 전 과정 단계별 밀착 지원
- K-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정적 판로와 시장정착 네트워크 강화
 - ‘K-뷰티 해외 판매장 통합 입점상담회(가칭)’ 개최, 타 국가 판매장 진출(교차 입점) 기회 제공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

2

사업 내용

□ 지원 대상

- 주요 수출 전략국 대상 K-뷰티 해외 판매장을 운영할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(주관기업)과 중소·중견 화장품 기업(참여기업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 - 주관기업은 국내 화장품 기업 15개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, 1차년도 사업 수행기간 내 추가 10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 필수*
 - * 수행기업으로 선정 된 이후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‘통합 입점상담회(가칭)’ 등을 통해 화장품 기업 10개사 이상 추가 컨소시엄 구성 필수(1차년도 최종 컨소시엄 수 : 25개사 이상)
 - ※ 수행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은 진출국의 화장품 유통 또는 마케팅 관련 有 경험자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

□ 지원 내용

○ K-뷰티 판매장 개관 및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인허가, 물류·통관, 전시·판매, 마케팅 등 현지 진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지원

- 판매장 운영 국가는 수출 전략국(10개국)에서 1개국만 지원 가능

* 동일 국가에 복수 지원 시, 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1개 과제만 최종 선발함

< 2026년 K-뷰티 해외 판매장 신청 대상 국가(10개국) >

구분	권역	국가
수출 전략국가(8)	아시아(3)	중국, 일본, 대만
	중동(1)	아랍에미리트
	유럽(2)	폴란드, 영국
	중남미(2)	브라질, 멕시코

※ 수출 전략국은 화장품 시장 특성(시장규모, 수출규모 등) 및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선정

○ 지원조건

주요 수행내용	① 현지 화장품 시장현황 및 규정·제도 조사 분석 ② 진출국 내 입점 지역 상권분석 및 화장품 판매장 개관 운영 ③ 국내 화장품 기업 대상 현지 인허가 등록 및 컨설팅 등 수출지원 ④ 화장품 판매장 내 참여기업의 수출 유망제품 전시·홍보·판매 ⑤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행사 ⑥ 현지 언론보도, SNS 홍보·마케팅 등 ⑦ 현지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채널 발굴협업 ⑧ 주간 업무보고 및 월간 예산 집행내역 제출
지원 규모 및 금액	■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200백만원(부가세 포함) / 2개 과제 이내 ※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%의 현금 또는 현물 매칭
지원기간	■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6년 11월 30일까지
사업기간	■ 최대 3년 ※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사업 지속 수행 여부 결정 ※ <u>사업기간은 (정부) 예산 심의·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</u>

성과지표 및 목표	■ 참여기업 수: 15개 기업 내외(신청 시)			
	구분	사업 신청 시	사업 선정 후	최종 컨소시엄 구성
	컨소시엄 구성	15개사 이상	10개사 이상*	25개사 이상
	* 사업 선정 후 화장품 기업 10개사 이상 추가구성 필수			
	성과지표		목표	
필 수	참여기업 수		25개사 이상	
	수출계약액		30만불 이상	
	인허가 등록(SKU 기준)		100건 이상	
	바이어 상담		100회 이상	
■ 홍보·마케팅 : 주요 박람회 부스 참가, 홈페이지 및 홍보영상 제작, 체험 세미나, 홍보·체험단 운영, 현지 언론보도 및 SNS 홍보 등				
기타	■ 사업 종료 후 2년간 사후관리 ※ 예시)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및 판매, 현지 유통 채널 발굴, 성사된 거래 실적, 화장품 매출 변화 등 분석			

□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의무사항

○ 관리기관(한국보건산업진흥원:KHIDI)

- 사업 공고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신청기업의 사업 추진비용 지원
- 신청기업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,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중개 지원 및 상시점검 가능
 - ※ 현지 화장품 판매장 운영 및 예산 사용 모니터링 등 수시 점검
 - ※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주관기업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가능(예시: 개관 일정 차질 발생, 주요 추진 계획 불이행 등)
- 사업 주요 성과(공개 가능한 자료) 대외 공개 및 홍보 지원

○ 신청기업(주관기업)

- 사업 기간 내 실현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을 수행,

사업 결과평가 일정에 맞춰 ‘결과보고서’ 및 회계정산보고서* 제출

* 회계 정산 비용은 **정부 지원금 예산 계획안에 포함하여 집행**

※ 사업 신청 시 주관기업-참여기업 간 컨소시엄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주관기업은 참여기업의 구성 및 협약서 내용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- 관리기관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
-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달성한 성과(계량·비계량) 필수 제출

성과지표		목표
필수	①참여기업 수	25개사 이상
	②수출계약액	30만불 이상
	③인허가 등록(SKU 기준)	100건 이상
	④바이어 상담	100회 이상
	⑤홍보·마케팅	비계량

- 사업 수행기업은 진흥원에서 사업기간 이후에 시행하는 후속 성과 관리에 반드시 협조해야함

※ 후속성과 : 수출·계약 실적 및 지원사업을 통한 유·무형적 성과 등

※ 성과 보고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과교류회, 보도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

※ 성과 보고 시 대외비 자료는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비공개 가능

3

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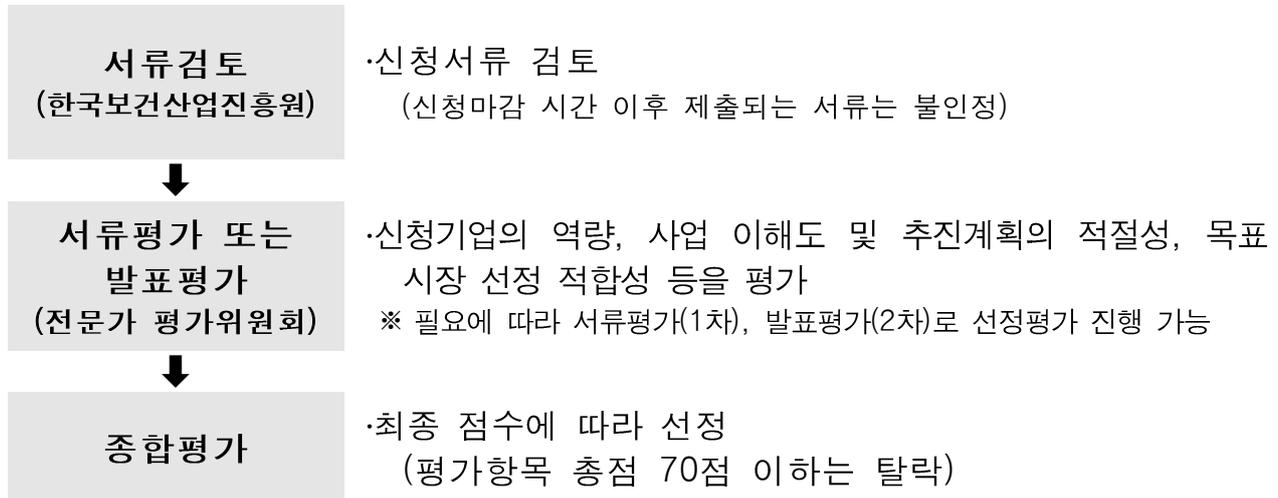
공고 및 신청 접수	한국보건산업진흥원	공고일로부터~4.1(수)
↓		
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	한국보건산업진흥원 (평가위원회)	4월 6-7(예정)
↓		
협상 및 회계교육, 수정계획서 제출	진흥원-사업 수행기업	4월 중(예정)
↓		
협약체결 및 선금지급	진흥원-사업 수행기업 간 양자협약(온라인) 체결	4월 중(예정)
↓		
착수보고 및 사업수행	사업 수행기업	4월~11월
↓		
중간점검	진흥원-사업 수행기업	8월 중
↓		
사업종료	사업 수행기업	11월 30일
↓		
사업 수행 결과보고 (결과보고서·회계정산보고서 제출)	사업 수행기업	12월 중
↓		
사업비(잔금) 지급	한국보건산업진흥원	결과보고 이후
↓		
정산 및 후속조치	진흥원, 사업 수행기업	12월~1월

※ 추진상황에 따라 공고 및 접수, 평가 및 선정, 협약체결, 착수보고 및 사업 수행 등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※ 수행기업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 조정될 수 있으며,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

4 평가 및 선정방법

□ 평가절차



※ 평가 시 일시·장소는 별도 통지

□ 평가항목

- 신청기업의 역량 40%,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30%, 목표 시장 선정 적합성 30%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(총점 100점)

구분	평가항목
신청기업의 역량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관기업의 전문성(전문인력, 현지 경험 및 네트워크 보유 여부 등) · 해당 분야 유사 사업 수행 실적 · 신청기업의 사업 추진 의지 및 경쟁력 · 컨소시엄 화장품 기업 구성 및 브랜드 파급력 등
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 타당성 · 사업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· 사업비 편성 및 지출 계획의 타당성
목표시장 선정 적합성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국가 현황분석 및 판매장 후보지 선정의 타당성 · 현지 온/오프라인 유통망 등 네트워크 구축 여부 · 사업 수행을 통한 수출액 등 지원실적 기대효과

□ 사업자 선정 방법

- 공고 마감 후 선정평가 일정 및 발표자료 제출 요청, 제출한 발표자료로 신청기업 발표평가 실시
 - ※ 선정평가는 모집기업의 2배수 이상 초과 신청의 경우, 1차 서류 평가로 1.5배수 선발 후 2차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 예정
- 발표 시간은 총 40분 내외(신청기업별 발표 20분, 질의·답변 20분)
 - ※ 발표는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,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
- 평가항목 결과 점수에 따라 선정(단, 평가항목 총점 70점 이하는 탈락)
-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
 - 주관기업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처리

- ① 신청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
- ② 계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
- ③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
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,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⑤ 관리기관(한국보건산업진흥원)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
- ⑥ 주관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,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
- ⑦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⑧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, 실패할 경우 3년간 정부과제 참여제한

5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공고 및 신청기간

- 공고일로부터 2월 13일(금),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

-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
- 제출처 : yoon123@khidi.or.kr

□ 제출서류

- (사업계획서) 사업계획서 2부(hwp(직인포함 원본), pdf 각 1부)
* 원본 전자파일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,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(1개 파일로 취합 후 일제 접수)
- (증빙서류) 부록서류는 반드시 사업신청서 뒤, 붙임으로 제출
* 컨소시엄 협약서, 중소기업확인서,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
- (공통 구비서류) 주관기업&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 각 1부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별지 2호양식) 1부
- (발표자료) 발표자료 1부(ppt 또는 pdf)
* 발표시간, 사업계획서, 선정평가 항목 등을 준수하여 작성 및 제출

□ 문의처
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화장품산업지원팀
윤은혜 연구원 ☎ 043-713-8876, E-mail : yoon123@khidi.or.kr